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한미간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64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칙	4
2. 기본계획 · 시행계획 및 조선산업협력협약체	8
3. 특화구역 및 전용단지	11
4. 조선기업에 대한 지원	15
5. 협력체계 구축	18
6. 조선산업협력기금	1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5.
3. 회 부 일 : 2026. 3.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자율운항 등 미래형 선박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전문인력 부족, 환경규제 강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조선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대한민국과 미국은 군사·안보 동맹과 산업협력을 토대로 조선산업 분야 친환경·스마트 전환, 함정 유지·보수·정비, 공동기술개발 등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대규모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고 조선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키고 양국 동맹의

실질적 성과를 확산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간 조선산업 분야 상호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의 원활한 협력기반 마련과 국내 조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권역별 조선산업 특화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조선산업 특화구역 내 함정 유지·보수·정비 기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함정관리전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정부는 조선기업이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펀드를 조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산업 생산성 향상 및 미래형 선박 기술개발을 위하여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선산업 관련 주요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선산업협력기금을 설치함(안 제22조).

Ⅲ. 검토의견

1. 총칙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간 조선산업 분야 상호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건조·제조·가공·조립·재생·수리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술·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나. 항해나 자원의 탐사·개발 등을 위하여 해상 또는 그 아래에 설치하는 이동식·고정식 기기 및 구조물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 2. “조선기업”이란 조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이란 대한민국과 미국 간 체결된 조선산업 관련 조약·협약·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조선 및 해양플랜트 관련 공동 연구개발사업 나. 미래형 선박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공동 개발·실증 사업 다. 조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 교육 및 교류 사업 라. 조선기자재의 공동 생산 및 공급망 구축 사업 마. 조선·해양 분야 표준화, 안전관리규정, 인증제도 관련 공동 협력 사업 바. 선박 및 조선기자재 등의 수출입 투자 촉진 사업 사. 제8조에 따른 조선산업 특화구역 내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 아. 그 밖에 조선산업 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미래형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소형모듈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6호의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마. 항로 개척 등을 위한 쇄빙선(碎氷船) 및 내빙선(耐氷船)

바. 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효율 및 안전·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 분야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조선기업의 해외 선박 수주 기회 증대, 조선산업 분야 규제 완화 등을 위하여 미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선산업 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지역 조선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 분야 우호 협력관계 증진 및 조선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조약 등과의 관계)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 분야 우호 협력관계 증진 및 조선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양국 간 체결된 조약·협약·협정 등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협약·협정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정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동 제정안의 입법취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함) 간 조선산업분야 발전과 협력을 통해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음을 밝히는 한편,

제정안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을 대한민국과 미국간 체결된 조선산업 관련 조약·협약·협정 등의 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관련 사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조선산업”과 “조선기업” 및 “미래형 선박”에 대해 정의함.

또한 제정안 제3조는 책무규정으로 국가로 하여금 양국간 조선산업 분야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수주기회 증대, 규제 완화를 위해 미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제5조는 조약 등의 관계에 있어서 양국간에 체결된 조약·협약·협정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약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3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5월 양국간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KUSPI, Korea-US Shipbuilding Partnership Initiative)가 체결되어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등¹⁾ 한미간 조선산업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간 조선산업 협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부는 동 제정안에서 규율하는 내용 중 상당수는 2026년 5월 현재 양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률에 해당내용을 미리 규정하기 보다 협정내용이 확정된 이후 해당내용의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산업통상부, 「한-미 조선협력센터」 추진 본격화, '26.5.9.

2. 기본계획 · 시행계획 및 조선산업협력협약 (안 제5조 · 제6조)

제 정 안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선산업 분야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조선산업 분야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 · 친환경 조선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4. 조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 · 방산 산업 연계 프로젝트 추진 방안
6.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기자재 공동 조달 및 공급망 안정화 방안
7. 그 밖에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립 · 변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선산업 관련 기관 ·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선산업협력협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조선기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조선산업협력협약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선산업협력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6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선산업 분야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7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조선기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조선산업협력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함.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선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양국간 조선산업 협력 관련 정책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산업통상부는 양국간 조선산업 협력에 관한 사항은 양국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단독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특화구역 및 전용단지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 정 안
제8조(특화구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의 원활한 협력기반 마련과 국내 조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권역별 조선산업 특화구역(이하 “특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특화구역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특화구역 지원) ① 정부는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화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항만·물류·교통·전력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능 고도화 2. 특화구역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시험·인증, 기술이전 등 기술혁신 기반 구축 3.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4. 특화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제15조에 따른 금융지원 등의 우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용단지 조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구역 내 함정 유지·보수·정비 기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함정관리전용단지(이하 “전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전용단지의 조성 범위, 대상 및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용단지 지원) ① 정부는 전용단지의 조성·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용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부지조성 공사비 지원 2. 전용단지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험설비 구축 지원 3. 전용단지 입주기업 대상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공급 지원 4. 전용단지 입주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친환경 기자재 도입 및 생산설비의 기능 고도화 지원 5. 전용단지 입주기업의 투자 유치 촉진 및 금융 지원 6. 생산·가공·조립 등 관련 기자재 공동 활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7. 그 밖에 전용단지 조성·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세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구역 및 전용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각종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구역 및 전용단지 입주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특화구역 지원사업
2. 제11조에 따른 전용단지 지원사업

제정안 제8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양국간 조선산업 협력과 국내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권역별 조선산업 특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는 정부가 특화구역에 항만·물류·교통·전력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고도화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함.

또한 제정안 제10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화구역 내에 함정의 유지·보수·정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함정관리전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제11조는 정부가 부지조성 공사비와 입주기업 연구개발·시험설비 구축지원 등 전용단지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함.

제정안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구역 및 전용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특화구역 및 전용단지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함.

나아가 제정안 제13조는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이 특화구역 및 전용단지 지원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함.

조선산업이 장치산업으로서 설비투자 부담이 큰 점, 협력업체와의 거리적 접근성이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간 조선산업 협력과 국내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구역과 전용단지를 지정·조성하여 지원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부는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내용은 양국간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논의함이 적절하다는 입장이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국세·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 관련 법률이 아닌 개별법률로 국세 또는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공유재산 사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절차가 아닌 개별법을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하여 제도취지를 고려할 때 개별법이 아닌 「국가재정법」 체계 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²⁾ 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4. 조선기업에 대한 지원 (안 제14조·제15조,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 정 안
제14조(맞춤형 조선기업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을 위하여 조선기업의 조선산업 관련 제품·시설에 대한 해외 인증 지원, 해외 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금융지원 등) ① 정부는 조선기업이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펀드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기준 및 절차, 펀드 조성·운영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 분야 우호 협력관계 증진 및 조선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생산 인력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선산업 전문인력의 해외 파견 및 연수 2. 미국 연구기관 등과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3. 석·박사학위 연계 국제 공동 학위과정의 지원 4. 재직자 직무 전환 및 신기술 관련 교육과정 운영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네트워크 구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개발, 공동 세미나·포럼 개최, 조선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표준화 협력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기업이 미국 조선소 법인의 지분 인수 또는 시설 확보 등을 통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산업기술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선산업 관련 주요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4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선기업의 제품·시설 관련 해외 인증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제15조는 정부가 조선기업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보증·보험 또는 금융 지원 제도를 수립·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또한 제정안 제17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양국간 조선산업 관련 연구·생산인력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하고, 제18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함.

제정안 제19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선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제20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선산업 관련 주요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게 함.

양국간 조선산업 협력의 실질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조선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부는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경우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는 점³⁾을 고려하여 법률간에 중복 또는 충돌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보증·보험 또는 금융 지원의 경우 경쟁국으로부터 국제통상규범 위반을 이유로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⁴⁾ 제도 설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또는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발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2. 국제공동연구개발

3. 국제전시회 참가

4. 기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과 관련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한-EU WTO조선분쟁('99~'05), 조선산업 구조조정 지원행위에 대해 일본의 WTO 제소('18.11, '20.1.) 등

5. 협력체계 구축 (안 제16조 · 제21조)

제 정 안
제16조(공동연구개발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산업 생산성 향상 및 미래형 선박 기술개발을 위하여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센터에 대하여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제조선산업 협의회) 정부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국제조선산업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정안 제16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제17조는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국제조선산업 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함.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 성격상 양국의 인적·기술적·자본적 협력이 필수적인 점, 2026년 5월 체결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서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국간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개발센터와 협의회를 설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부는 양국간 추가적인 협정결과를 반영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므로 논의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조선산업협력기금 (안 제22조)

제 정 안
제22조(조선산업협력기금의 설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선산업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 2. 정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조선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22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선산업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하게 하는 것임.

장치산업인 조선산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기금을 설치·운용하여 해당 기금을 협력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경우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양국간 조선산업협력사업이 안정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부는 재원 부담 등을 포함한 한미 조선 협력의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내부 검토와 부처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기금의 법제화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기획예산처는 동 기금의 경우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결성이 부족하고 출연금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재원 구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요건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0

5)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